

한ᆞ칠레 FTA

에 따른 상계관세조치

·

**1. 요약**

□ “상계관세조치”는 수출국이 지급한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해당 보조금 등 의 금액 이하의 관세(이하 “상계관세”라 함)를 부과하는 관세조치 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□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가 시작된 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해 보조금 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.

□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 금 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 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물 품에 대한 보조금 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 등의 국내산업 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을, 수 출자는 수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 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 해효과가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제의 할 수 있습니다.

□ 담당 부서

○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관세제도과

○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

**2. 개요**

# □ 상계관세조치의 개념

○ “상계관세조치”란 수출국이 지급한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 조치를 말합니다<출처: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- FTA 용어집>.

# □ 상계관세의 부과대상

○ 외국에서 제조ㆍ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 금이나 장려금(이하 “보조금 등”이라 함)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 로 인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이하 “실질적 피해 등” 이라 함)에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해 해당 보조 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(이하 “상계관세”라 함)를 추가하여 부 과할 수 있습니다(「관세법」 제57조제1항).

ㆍ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ㆍ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

# □ 상계관세조치로 보호되는 국내산업

○ 상계관세조치로 보호하고자 하는 국내산업은 “보조금 등을 받은

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”을 말합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73 조제2항).

○ 위의 “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”에서 해당 수입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 사업과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생산자를 제외한 자에 의한 생산사업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73조제2항 및 「관세법 시행규칙」 제22조제 2항).

-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보 조금 등을 받은 물품을 수입한 생산자

-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매우 적은 생산자

# □ 상계관세의 부과요청 및 철회

○ 부과요청

-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서 국 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ㆍ조합 등(이하 “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“라 함) 또는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기획재 정부장관에게 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(「관세법」 제57조,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73조제1항, 제3항 및 「관세법 시행 규칙」 제22조제4항).

-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은 무역위원회에 대한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 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합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73조제1항).

- 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관계 증빙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73 조제4항).

ㆍ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 및 생산량

ㆍ 해당 물품의 수출국ㆍ수출자ㆍ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대한 민국의 수입자ㆍ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

ㆍ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대한민국 으로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

ㆍ 국내의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 도ㆍ생산자ㆍ생산량ㆍ공장도가격ㆍ시장가격 및 원가계산

ㆍ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관련 국내산업의 실질 적 피해 등에 관한 사항

ㆍ 수출국에서 해당 물품의 제조ㆍ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지급한 보조금 등의 내용과 이로 인한 해당 물품의 수출가격 인하효과

ㆍ 국내의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생산자들의 해당 조사신 청에 대한 지지 정도

ㆍ 첨부한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 ㆍ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○ 조사신청의 철회

- 조사를 신청한 자가 해당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철회사 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.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철회서 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한 후에 해당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 정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76조제1 항 및 「관세법 시행규칙」 제25조제1항).

-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신청 철회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무역위원 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 으며 잠정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이 경 우 해당 잠정조치에 의해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 된 담보를 해제해야 합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76조제2항ㆍ제3 항).

-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기간 중에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로서 해당 철회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회 에 따른 조사종결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(「관세법 시행규칙」 제25조제2항).

# □ 보조금 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

○ 조사의 개시

- 조사개시 여부 결정

ㆍ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 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의

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74조제1항 및 「관세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1항).

√ 조사대상물품(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 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선정된 조 사대상물품)

√ 조사대상기간

√ 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(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많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)

- 조사신청의 기각

ㆍ 무역위원회는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할 때 조사신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 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74조제2항 및 「관세법 시행규칙」 제 23조제2항ㆍ제3항).

√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 가 아닌 경우

√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 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
√ 보조금 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가격대비 100분의 1 이상에 미 달되거나(국제협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제외함) 실질적 피 해 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√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

√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에 대해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 들의 생산량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

√ 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 한 조치가 취해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

- 조사개시결정 통지 등

ㆍ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및 수출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74조제3항).

○ 예비조사

- 예비조사의 실시

ㆍ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과 조사개시의 결정 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 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75조제2항).

- 예비조사 기간 연장

ㆍ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 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(「관세법 시 행령」 제75조제6항).

- 잠정조치 필요여부 결정 등

ㆍ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잠정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 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결 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75조제3항).

- 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본조사 종결

ㆍ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에 따른 보조금 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 이상에 미달하거나(협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 우는 제외함)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본조사를 종결해야 합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75조제4항 및

「관세법 시행규칙」 제24조).

- 예비조사 결과 보고

ㆍ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의 제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(「관 세법 시행령」 제75조제9항).

√ 잠정조치

√ 상계관세부과

√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

○ 본조사

- 본조사 결과의 제출

ㆍ 무역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(「관세 법 시행령」 제75조제5항).

- 본조사 기간의 연장

ㆍ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 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본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 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75조제6항).

- 본조사 결과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조치

ㆍ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결과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합니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 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75조제7 항).

ㆍ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 결정의 관보게재일부터 1년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합니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개시 결정의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75조 제8항).

○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

- 자료협조 요청

ㆍ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를 위한 조사 및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관계행정기관ㆍ국내생산자ㆍ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ㆍ수입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78조제1항 본문).

√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보조금 등의 지급여부를 조사하 기 위한 질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신을 위해 수출국정부 또는 수 출자에게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합니다.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 에 대해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78조제1 항 단서).

- 자료요청 거부 등의 조치

ㆍ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를 위한 조사 및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할 때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 출하지 않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 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상계관세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78조제5항).

- 자료 등의 다른 용도 사용 금지

ㆍ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 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ㆍ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78조제6

항).

○ 실질적 피해 등의 판정

- 조사ㆍ판정의 근거

ㆍ 무역위원회는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합니다(「관세법 시 행령」 제77조제1항).

1.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물량(해당 물품의 수입이 절대 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해 상대적으로 뚜렷하 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함)

2.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가격(국내의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 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함)

3. 보조금 등의 금액의 정도(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가격 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 를 포함함)

4. 국내산업의 생산량ㆍ가동률ㆍ재고ㆍ판매량ㆍ시장점유율ㆍ가 격(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함)ㆍ이윤·생산성ㆍ 투자수익ㆍ현금수지ㆍ고용ㆍ임금ㆍ성장ㆍ자본조달ㆍ투자능력ㆍ 기술개발

5. 1. 및 2.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

-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정근거

ㆍ 실질적 피해 등을 조사ㆍ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의 판정은 위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사 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합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77 조제2항).

√ 해당 보조금 등의 성격 및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무역효 과

√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현저한 증가율

√ 대한민국에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 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(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감안한 것이어야 함)

√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 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가 능성

√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

- 피해의 통산 평가

ㆍ 무역위원회는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하는 경우 2 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에 따른 피해를 통산 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77조제3항 및 「관 세법 시행규칙」 제26조).

√ 보조금 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 이상(국

제협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제외함)에 해당하는 경우

√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

# □ 잠정조치

○ 잠정조치의 요건

-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가 시작된 물품이 보조금 등을 받아 수입되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해 보조금 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(이하 “잠정조치”라 함) 를 할 수 있습니다(「관세법」 제59조제1항).

ㆍ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

ㆍ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철회하거나 위반한 경우와 그 약속 의 이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

- 잠정조치에 따른 담보의 종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잠정상계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(「관세법 시행 령」 제80조제3항).

ㆍ 금전

ㆍ 국채 또는 지방채

ㆍ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ㆍ 납세보증보험증권

ㆍ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

○ 잠정조치의 적용

- 잠정조치는 예비조사의 결과 보조금 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 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 된 경우로서 해당 조사의 개시 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후부터 적 용할 수 있으며, 적용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80조제1항ㆍ제2항).

○ 잠정조치의 종료에 따른 잠정상계관세 환급 등

- 잠정조치가 취해진 물품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해야 합니다 (「관세법」 제59조제2항 본문).

ㆍ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 ㆍ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

ㆍ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이 수락된 경우

-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 관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해야 합니다(「관세법」 제 59조제2항 단서).

ㆍ 보조금 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 실이 있다고 판정된 이후에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이 수락된 경 우

ㆍ 「관세법」 제61조 단서에 따라 상계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

# □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

○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및 수락

- 약속의 제의

ㆍ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 조금 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 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ㆍ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수출자는 다음의 약속(이하 “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”이라 함) 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(「관세법」 제60조제1항).

√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: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 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 등의 국내산업 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

√ 해당 물품의 수출자: 수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 등 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가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겠다는 약속

ㆍ 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제의하려는

경우에는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,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 의 원본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. 이 경 우 수출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의하는 약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81조제1항 및 「관세법 시행규칙」 제30조제1항).

√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 피해 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 으로 인상한다는 내용

√ 약속수락 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

√ 형식ㆍ모양ㆍ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의 판매 등의 방법으 로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

√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내용

√ 수출국 안에서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과 대한민국으로의 수 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 고하겠다는 내용

√ 관련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

√ 그 밖의 상황변동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에 대해 재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

- 약속의 수락

ㆍ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에 따라 제의한 약속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ㆍ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

의 의견을 묻고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81조제2항 본문 및 「관세법 시행규칙」 제30조제2항).

√ 즉시 가격을 수정하는 약속인 경우

√ 약속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조금 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는 약속인 경우

√ 약속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조금 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인 경우

ㆍ 위의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속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81조제2항 단서 및 「관세법 시 행규칙」 제30조제3항).

√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하여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 출자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

√ 약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

√ 과거에 약속을 위반했던 사실이 있는 등 약속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

○ 약속의 수락에 따른 조사의 중지ㆍ종결과 그 예외

- 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해야 합니다(「관세법」 제60조제2항 본문).

- 다만,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 정부가 피해 조사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출국 정부는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 이 있기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, 무역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서류의 원본을 송부해야 합니다(「관세법」 제60조제2항 단서 및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81조 제1항).

-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없거나 보조금 등의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약속의 효력은 실효된 것으로 봅니다. 다만,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없 거나 보조금 등의 금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 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 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해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 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81조제6항).

○ 약속 미이행 시 조치

-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가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수락하고 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해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81조제5항).

# □ 상계관세의 부과

○ 상계관세의 부과방법

- 상계관세의 산출

ㆍ 상계관세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보조금율의 범위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합니다(「관세법 시행규칙」 제29조제1항).

보조금율 = 보조금 등의 금액 × 100

과세가격

- 상계관세의 부과방법

ㆍ 상계관세는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상계관세율을 정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79조제1항 본문).

ㆍ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자료의 공 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수출자에 대해서는 단일 상계관세율을 정해 부과할 수 있 습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79조제1항 단서).

ㆍ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수출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수출자의 상계관세율을 다음 방법에 따라 가중평균한 상계 관세율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합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79 조제2항 본문 및 「관세법 시행규칙」 제29조제2항).

√ 보조금 등을 받는 수출자가 다수인 때에는 수출자별 수출량 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보조금 등의 금액이 과세가격의 100분의 1 미만인 수출자는 상계관세율 산정대상에 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.

- 수출국을 지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

ㆍ 수출국을 지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사대상 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수출국의 신규수출자(이하 “신규수출자”

라 함)가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되는 수출자(이하 “기존수출 자”라 함)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수출자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합니다. 다만, 신규수출자가 특수관계가 없다고 증명하는 때에는 조사를 통해 별도의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23조제1항 및 제79조제3항).

√ 신규수출자와 기존수출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 인 경우

√ 신규수출자와 기존수출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

√ 신규수출자와 기존수출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

√ 특정인이 신규수출자와 기존수출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 접 또는 간접으로 5%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

√ 신규수출자와 기존수출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 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

√ 신규수출자와 기존수출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

√ 신규수출자와 기존수출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 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

√ 신규수출자와 기존수출자가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20조제 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

○ 상계관세부과 적용 시기

- 상계관세의 부과는 조치일(관련 기획재정부령을 공포하여 시행한 날을 말함)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됩니다(「관세법」 제 61조 본문).

- 상계관세의 소급부과

ㆍ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해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 는 경우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해서 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(「관세법」 제61조 단서 및

「관세법 시행령」 제82조제1항).

√ 실질적 피해 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실질 적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 피해 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

√ 비교적 단기간 내에 대량 수입되어 발생되는 실질적 피해 등 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상계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과거에 보조금 등을 받아 수입되어 실질적 피해 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또는 수입자가 보조 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 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

√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 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잠 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 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(약속위반 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은 제외함)

√ 그 밖에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

ㆍ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본조 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 당 물품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상계관 세의 부과를 소급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 82조제2항).

# □ 상계관세부과조치의 재심사 등

○ 재심사여부 결정

-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 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(「관세법」 제62조제1항 및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84조제1항).

ㆍ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

ㆍ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 려가 있는 경우

ㆍ 실제 보조금 등의 금액보다 상계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 우

○ 재심사 절차

- 재심사의 요청은 상계관세 또는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시행

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상계관세 또는 상계 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개월 이전에 요청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 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84조제2 항).

-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관계 행 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가 이를 조사해야 합니다. 이 경 우 무역위원회는 해당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 할 수 있습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84조제4항).

-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심사 사유의 조 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 다 만,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개월 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84조제5항).

○ 재심사결과에 따른 조치

-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, 약속 내용의 변경, 환급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조사결과를 제출받 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. 다만,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 다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84조제6항).